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37
----------	-------

발의연월일 : 2026. 3. 12.

발 의 자 : 엄태영·박충권·이만희
권영진·김상훈·이종욱
서천호·김재섭·배준영
박성민·강명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기업에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를 수탁기업에 요구할 우려가 있고, 수탁기업은 거래 단절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납품대금 연동을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데 소극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에 따른 예외 적용 요건을 수탁기업이 서면으로 요청하여 합의한 경우로 변경하고, 위탁기업의 요구·유도에 의하여 합의된 미연동 약정 부분은 무효로 하며, 조사 협조를 이유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4호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4호 중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를 “수탁기업의 서면요청으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약정 중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법률 제21191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5조제1항제1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 ② (생 략)</p> <p>③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p> <p>1. ~ 3. (생 략)</p> <p>4. <u>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u>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p> <p>④ ~ ⑥ (생 략)</p> <p><u><신 설></u></p> <p>법률 제21191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p>	<p>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수탁기업의 서면요청으로 위 탁기업과 수탁기업이</u>----- ----- -----</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⑦ <u>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 위에 의하여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약정 중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에 한 하여 무효로 한다.</u></p> <p>법률 제21191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p>

정법률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13의2. (생략)

14.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수탁·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위탁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가. ~ 다. (생략)

<신설>

② ~ ④ (생략)

정법률

제25조(준수사항) ① -----

-----.

1. ~ 13의2. (현행과 같음)

14.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

한 행위

② ~ ④ (현행과 같음)